

# [재]수원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보고

##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2. 13(수) ~ 2. 22(금)【8일간】
- 감사반 : 감사담당관 등 10명(시민감사관 2명 포함)
- 감사범위 : 2012. 1. 1일 문화재단 출범 이후 업무전반
- 중점감사사항
  - 인사, 재정, 예산·회계 분야의 운영 적정성
  - 기획공연 등 공연 관련 분야 및 공연장 대관 등 공연 관련 분야 등
- 기본현황
  - 설립근거 :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조례 공포일 : 2011. 8. 5
    - 업무 개시일 : 2012. 1. 1
  -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수원화성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 관광 안내, 콘텐츠 개발
    -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등
  - 조직 및 인원
    - 조직 : 3본부(8개팀), 1단
    - 인원 : 현원 103명 (임원 1명, 계약직 45, 운영직 57)
  - 예산규모 : 13,455백만원 ('12년도 12,972백만원)

## II

### 감사결과

#### ■ 지적건수 : 총 17건

- 행정상 조치 : 17건(시정 5, 주의 12)
- 재정상 조치 : 2건 4,530,000원(회수)
- 기            타 : 기관경고

## III

### 감사총평

#### 수원문화재단은

- 사람중심의 문화도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성장하는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2012. 1. 1일 출범하였으며, 화성행궁 및 제1, 2야외 음악당, 화성홍보관, 유스호스텔 등 시설물을 운영 관리함은 물론, 우리시 대표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수원국제음악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및 예술단체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시 문화를 살찌우는 감성적 통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음.

####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 ■ 국제규모의 각종 문화예술 축제 추진

- 우리시 대표축제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
- 국내·외 우수단체들이 다양한 장르로 시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수원화성국제연극제

## ■ 문화행사 보조사업 및 문화예술발전 기금 사업 지원

- 제16회 나혜석 미술대전, 제17회 민족 예술제
- 제22회 수원시 문인화대전, 제11회 수원화성 주부국악 전국대회
- 장애인 연극 「꽃들에게 희망을, 해설이 있는 오페라 다이제스트 등

## ■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 수원화성행궁, 수원화성홍보관
- 수원 제1야외음악당(인계예술공원), 수원 제2야외음악당(만석공원)
- 수원화성 사랑채(수원호스텔)

## 이번 종합감사는

■ 재단 출범 이후('12. 1. 1일) 첫 회 종합감사이며, 종전 화성운영재단을 모체로 하여 조직 및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나, 출범 초기 일부 규정 정비 및 운영에 있어 소홀 또는 미비점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연 130억에 육박하는 규모의 예산(출연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써 자금관리에 대한 철저한 수급계획 및 효율성이 요구됨.

■ 우리시 대표축제에 대한 추진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이라는 대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에 있어 지방계약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 등에 준하는 자체 규정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요구되며, 특히 현재 자체 문책기준(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훈계 또는 주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 마련 또한 요구됨.

※ 금번 감사 시 개인문책(훈계)에 이르는 사항은 종합하여 기관경고로 갈음함.

## IV

### 주요지적사항

#### 수원화성사랑채 부가가치세액 징수 소홀 (처분번호: 1)

- 수원화성사랑채 객실요금에 대해서 2012. 7월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급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2. 7. 9일부터 객실요금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징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2. 7. 9일부터 '13. 2. 7일까지의 구분이 되지 않은 객실이용료에서 부가가치세 11,576,630원을 납부

⇒ 관련 조례 시급 개정을 통하여 부가세를 구분함과 동시에 조속히 명시

#### 계약직 직원채용 부적정 (처분번호: 3)

- 2012. 2. 29일 「제2회 계약직 직원 공개 채용 시험」추진시 '문화예술·관광·공연기획 분야 7급'에 응시한 ○○○가 제출한 응시원서와 첨부자료에는 채용 기준에 부적합한 국제교류학 전공의 졸업예정증명서('12. 3. 31일자 졸업예정자)를 제출하였고,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사실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졸업예정증명서를 졸업증명서로 적격하게 판단하여 최종합격하여 부적격자를 임용

⇒ 향후 채용 시 구비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자격에 흠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업무 연찬 실시

#### 출연금의 유휴자금 관리 소홀 (처분번호: 4)

- 수원시 문화관광과로부터 2012. 1. 16일, 3. 19일 2차례 전도된 출연금 12,779,363,000원에 대해서 이는 수원문화재단 1년 예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휴자금 발생이 명백한 상황에서 월별 자금 수급계획 및 지출계획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익을 높여야 함에도 별도의 계획없이 보통예금 계좌(재단 출연금 계좌)로 운영하여 결국 2012. 12. 31일 현재 3,126,585,592원의 거액의 잔액을 보통예금계좌로 방치되어 잔액 대비 단 5,907,918원의 이자수익만을 발생케 하는 등 유휴 자금 및 유휴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익에 소홀

※ 단순 수원시금고 정기예금 약정이자율로 환산했을 경우 약 74,640천원 손실

⇒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수급계획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자금에 대한 정기예금 등을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조속 마련

※ 재단만이 아닌 주무(감독)부서인 시 문화관광과의 대책과 지도관심이 절실히 필요

#### **직원 피복비 집행 부적정(처분번호: 5)**

- 2012. 3. 29일부터 11. 22일까지 총 14차례 38,061,500원의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피복비의 경우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를 면밀히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2. 5. 9일 코콜상사로부터 구입한 재단 사무직원 단체복(4,000천원)을 피복비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으며, 특히 2012. 11월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구입한 등산용 패딩점퍼(21,390천원)의 경우 고가의 기성제품을 피복대상이 아님에도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

⇒ 집행된 피복비 중 일부(4,500천원) 회수 조치

#### **문화행사 보조사업 및 문화예술발전기금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처분번호: 6)**

- 총28개의 문화행사보조사업과 21개의 문화예술발전기금 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통상 30일 이내의 범위)받아야 함에도 50일 이상을 넘어 과도하게 지체되어 실적보고서를 제출(문화행사 보조사업 9개, 기금사업 3개)받았으며, 또한 수원문화원에서 추진한 기획공연 The Best of Musical의 경우 당초 예산사업으로 계상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자부담없는 보조액 30,000천원 중 28,292천원(보조액의 94.3%)을 이벤트회사와 수의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등 보조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었으며, 아주대학교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모니터링 역시 보조사업이 아닌 용역비로 계상하여 문화재단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등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게 보조사업을 운영  
⇒ 보조사업 관리 철저 및 목적 및 취지에 맞게 보조사업 선정

### 민간위탁금 지급·정산절차 부적정(처분번호: 8)

- 「제9회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를 수원문화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금(9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민간위탁의 경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약 내용에 대해 반드시 공증하여야 함에도 공증을 하지 않았으며, 위탁금액의 50%에 해당하는 45,279천원을 행사대행경비로 정훈 커뮤니케이션에 지급하면서 계약서에 명시한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기타 정산 관련’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견적서만 첨부한 채 행사대행경비를 지급하였는데도 정산 검사 시 별다른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  
⇒ 향후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산검사 철저

### 급량비 현금영수증 제도 미이행(처분번호: 9)

- 특근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출증빙서에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거래처 계좌로 거래금액을 입금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2012. 2. 17일부터 2012. 12. 31일까지 총 50회 29,534천원의 특근급식비를 집행하면서 현금영수증이 아닌 신용승인으로 급식비를 집행  
⇒ 향후 현금영수증 제도를 철저히 이행

### **홍보용 기념품 배부 부적정(처분번호: 13)**

- 홍보용 기념품의 경우 별도의 대장을 통하여 배부대상 및 수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2012. 5. 17일 일본여행사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원문화재단을 홍보하기 위해 8G USB 100개를 구입(1,306천원)하였으나,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대표이사 외부손님, 시 문화관광과, 이사회 등에 배부하는 등 예산을 통해 구입한 홍보물을 부적합한 대상에게 배부  
⇒ 향후 홍보물 대장관리 및 부적합한 대상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 **장용영 수위식 음향장비 임차 등 계약 부적정 (처분번호: 15)**

-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해야 함에도 2012. 2. 23 ~ 12. 31일까지 '2012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장용영수위식 음향장비'등을 임차하면서 실무부서 요청에 따라 일정 금액으로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의계약(26건, 총278,276천원)을 체결함으로써 일정업체에 특혜를 부여  
⇒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분리발주 금지

###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통합개편 용역 협상계약 위원선정 소홀 및 계약체결 부적정 (처분번호: 17)**

-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통합개편 용역'을 (주)지캠프 김희선과 2012. 7. 2일 81,648천원에 계약하여 완료하였으나, 해당용역 입찰 공고시 제안서의 종합 평가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 85%미만은 협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고, 기술능력 평가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실시해야 함이 타당함에도 선정된 평가위원 중 일부 위원 경우 관련분야와

거리가 먼 경영, 경제 분야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사업의 특성, 전문성 및 기술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못했으며, 아울러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미만(68점)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고하여 놓고 63.27점인 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제안된 가격에 대한 협상 없이 계약을 체결

⇒ 기술능력 하한 기준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제출된 설계서를 토대로 가격에 대한 협상 또한 실시하시기 바람.



# V

## 처분지시 목록

연번	제 목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비고
			방법	금액(원)		
총계	17건	시정5 주의12	회수	4,530,000		
1	○ 수원화성사랑채 부가가치세액 징수 소홀	주의				
2	○ 용역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공동계약 집행 부적정	주의				
3	○ 계약직 직원채용 및 채용 절차의 부적정	주의				
4	○ 출연금의 유휴자금 관리 소홀	시정				
5	○ 직원피복비 집행 부적정	시정	회수	4,500,000		
6	○ 문화행사 보조사업 및 문화예술발전기금 보조사업집행 부적정	주의				
7	○ 민간행사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주의				
8	○ 민간위탁금 지급·정산절차 부적정	주의				
9	○ 급량비 현금영수증 제도 미이행	주의				
10	○ 공인관리 부적정	시정				
11	○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시정	징수	30,000		
12	○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시정				
13	○ 홍보용 기념품 배부 부적정	주의				
14	○ 감독관 지정 및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소홀	주의				
15	○ 장용영 수위식 음향장비 임차 등 계약 부적정	주의				
16	○ 수원시 학술용역관리 규정 미 준수 및 정산업무 소홀	주의				
17	○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통합개편 용역 협상계약 위원선정 소홀 및 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 VI 시민감사관 활동

### ■ 활동개요

- 참여일시 : 2012. 2. 18(월) ~ 2. 19(화), 14:00 ~ 18:00
- 참 여 자 : 시민감사관 박병선, 박은선(수원YMCA시민중계실)

### ■ 지적 및 수범사항

구 분	박병선 감사관	박은선 감사관
지적 및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료 책정 불합리</li> <li>• 스마트폰 음성안내시스템 개선</li> <li>• 3D애니메이션 상영관 오작동</li> <li>• 행궁내 배수시설 미흡</li> <li>• 집사청 전시물 노후</li> <li>• 행궁 관광안내소 위치 및 시설 개선</li> <li>• 화성열차 부분 보완</li> <li>• 수원호스텔 부분 보완</li> <li>• 홈페이지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천 공공예술프로젝트 인공조형물 설치 시 관련단체 충분한 협의 필요</li> <li>• 문화해설사 시스템 자원봉사제에서 기간제근로자 체계로 변경</li> <li>• 문화해설사 통일된 복장 필요</li> </ul>
수범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아이템 창출 등 시민문화욕구충족을 위한 노력 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관광객 유치를위한 프로모션 및 좋은 프로그램 개발, 적극적인 홍보 인상</li> </ul>

※ 세부사항 별도 통보

### ■ 조치계획

-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통보 시 관련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도로 제출받아 시민감사관에게 결과 통보

## VII 우수사례

### 1 수원화성 정조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 청소년에게 수원화성과 행궁을 테마로 한 다양한 역사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조대왕의 효, 위민정신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계기 마련

#### ■ 사업개요

프로그램	유형	대상	운영 일정	운영계획
리틀정조체험학교	당일	초3~6	1 ~ 12월	14회
리틀정조캠프	1박2일	초3~6	3 ~ 11월	4회
정조대왕리더십캠프	1박2일	중1~3	7 ~ 8월	4회

- 내용 :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화성행궁 답사, 무예24기 관람, 무예와 국궁체험, 전통 만들기 체험, 화성열차 탑승 등

#### ■ 추진실적

프로그램	기간	유형	대상	횟수	운영 인원
리틀정조체험학교	2012. 1~12	당일	3~6학년	총 14회	454명
리틀정조캠프	2012. 7~8	1박2일	3~6학년	총 4회	121명
정조리더십캠프	2012. 3~11	1박2일	중1~3학년	총 4회	157명

#### ■ 향후계획

- 참여자 모집 시기 : 프로그램별 시행 1개월 전
- 모집 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공문 발송), 오프라인(현수막 등)
- 수학여행 및 답사 프로그램으로 홍보
  - ‘2013 내나라여행박람회’(2.28~3.3)참가하여 초, 중, 고 수학여행 담당교사 및 지자체, 업계에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 및 상담기회 제공
  - 각 대학 역사, 교육, 건축 관련 학과에 맞춤형 답사 프로그램 제안 및 자료 우편발송

